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25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6월 5일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선산출장소장 황 필 섭

나.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확대 시행으로 이용객
편의 증대 및 효율적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등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확대(안 제4조)
 - 전자결제 시스템(신용카드) 도입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영 수

- 본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수입금 입금 규정을 정비, 모든 시설 사용료는 다음날 입금하도록 개정, 휴양림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